

유독물질 및
제한물질 · 금지물질의 지정
일부개정(안)

2017. 3.

환 경 부

1. 개정 이유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에 대하여 제한 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기존 제한물질인 크로뮴(6+) 화합물(06-5-10)에 대하여 건축용 페인트 용도로의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을 금지함

환경부고시 제2017-271호

환경부고시 「유독물질 및 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」(제2016-249호, 2016.12.28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7년 3월 00일

환 경 부 장 관

유독물질 및 제한물질·금지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(안)

유독물질 및 제한·금지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의 고유번호 06-5-10의 크로뮴(6+)화합물[Chromium(6+) compounds 18540-29-9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대한 제한내용 중 건축용 페인트 용도로의 제조 및 수입 제한은 이 고시 발령한 날로부터 6개월 후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 제한은 이 고시 발령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한다.

[별표2]

제한물질(제4조제1항 관련)

고유번호	화 학 물 질 의 명 칭	제한내용
06-5-1	말라카이트 그린[Malachite green; 10309-95-2]의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	조경용 및 섬유염색용 염료를 제외한 용으로는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을 금지
06-5-2	브롬화 메틸[Methyl bromide; 74-83-9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	검역법에 의한 소독기준에서 정해진 검역용을 제외한 용도로는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을 금지
06-5-3	사염화 탄소[Carbon tetrachloride; 56-23-5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	옥외살충제용으로는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을 금지
06-5-4	수산화 트리알킬주석[Trialkyl tin hydroxide]과 그 염류(산화 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)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(tributyltin compound), 또는 그 중 하나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	1.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을 금지한다. 가.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(단, 군함·경찰용선박은 제외한다) 및 어선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어선의 방오도료용 나.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시설과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수와 접촉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시설물, 어망, 어구의 방오도료용 다. 산림법에 의한 목재방부처리용 라. 냉각수살균제용
06-5-5	폼알데하이드[Formaldehyde; 50-00-0] 및 이를 1%이상 함유한 혼합물	가구용 무늬목, 직물, 3세이하 유아용품, 도배용 폴, 피혁가공 유연제의 용도로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을 금지
06-5-6	노닐페놀[Nonylphenols; 25154-52-3, 104-40-5, 84852-15-3, 139-84-4, 136-83-4, 90481-04-2, 11066-49-2, Nonylphenol ethoxylates; 9016-45-9, 27177-05-5, 68412-54-4, 127087-87-0, 68412-53-3, 26027-38-3, 37205-87-1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	1.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을 금지한다. 가. 가정용 세척제, 잉크, 페인트의 용도 나. 산업용·업소용 세정 및 세척제, 섬유·가죽 가공 용도(단, 하폐수로 배출되지 않는 공정에서 사용하거나 하폐수 처리 시설 유입 전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)

고유번호	화 학 물 질 의 명 칭	제한내용
06-5-7	백석면[Chrysotile; 12001-29-5] 및 이를 1% 이상 함유한 혼합물	석면시멘트제품(지붕·천장·벽 및 바닥 재용) 및 석면마찰제품(「자동차관리법」상의 자동차용)의 용도로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을 금지
06-5-8	납[Lead; 7439-92-1] 및 이를 0.06% 이상 함유한 혼합물	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용도로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을 금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을 금지
06-5-9	카드뮴[Cadmium, 7440-43-9] 및 이를 0.1 % 이상 함유한 혼합물	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을 금지
06-5-10	크로뮴(6+)화합물[Chromium(6+) compounds 18540-29-9] 및 이를 0.1% 이상 함유한 혼합물	1.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<u>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저장, 운반, 사용을 금지한다.</u> 가.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 나. <u>건축용 페인트 용도(차량용, 선박용, 전기전자용, 공업용, 중방식용, 도료표지용, 플라스틱용 등 산업용은 제외한다.)</u>
06-5-11	트리클로로에틸렌[Trichloroethylene, 79-01-6] 및 이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	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을 금지
06-5-12	테트라클로로에틸렌[Tetrachloroethylene, 127-18-4] 및 이를 0.1%이상 함유한 혼합물	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러졸 용도로 제조, 수입, 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을 금지